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77호

「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, 동법 시행령 제12조, 제12조의2 및 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2 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-

- 1. 「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1 제1호의 기관 (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의 기관 중 증권금융회사 포함)
 - : 총부채의 1만분의 0.435895
- 2. 「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1 제2호의 기관: 총부채의 1만분의 0.756337 및 영업수익의 1만분의 2.062859
- 3. 「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1 제3호의 기관: 총부채의 1만분의 0.467999 및 보험료수입의 1만분의 1.107274